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희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1년 12월 일
제 출 자 : 도희재, 전수곤, 김영래
배재만, 구교강, 김성우, 황숙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현재 법령에 맞게 직무의 정의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직무” 정의 삭제(안 제2조)
다. 부적절한 기호 삭제(안 제1조, 제5조, 제9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7 ~ 12. 21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를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여행”을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를 “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의・・상해・・”를 “제3호의 상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하・・심의회・・”를 “(이하 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장애----------.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3호의 상해----------.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에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역	□사망	□장애	□상해	
	보상금수령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및발생상황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

------(이하 심의회----------

-----.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역	□사망	□장애	□상해	
	보상금수령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및발생상황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